

2022년도 제12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2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1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
구분	면제서류 접수·심사	원서접수 (2·3차 동시접수)	시험장소 공 고	시행지역	시험일자	합격자발표
제1차 시험	2. 7(월) 09:00 ~ 2. 18(금) 16:00 [10일간, 토·일 제외]	(정기접수) [5일간] 2. 14(월) 09:00 ~ 2. 18(금) 18:00	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	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	3. 19(토)	4. 20(수)
(빈자리접수) [2일간] ※선착순, 환불불가 3. 10(목) 09:00 ~ 3. 11(금) 18:00						
제2차 시험		(정기접수) [5일간] 5. 16(월) 09:00 ~ 5. 20(금) 18:00	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	서울	6. 11(토)	7. 13(수)
제3차 시험	(빈자리접수) [2일간] ※선착순, 환불불가 6. 2(목) 09:00 ~ 6. 3(금) 18:00	7. 25(월) 공고예정	8. 19(금) ~ 8. 20(토)			

- ※ 증빙서류 제출·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
- ※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(단, 원서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 접수 가능) 하며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- ※ 정기접수 마감일 13:00~18: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, 계좌이체만 가능
- ※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(취소)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,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

2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가. 시험과목

구 분	시 험 과 목	
제1차 시 험	공통필수 (3과목)	① 공통필수 I (산업안전보건법령)
		산업안전 ② 공통필수 II (산업안전일반)
		산업보건 ② 공통필수 II (산업위생일반)
		③ 공통필수 III (기업 진단·지도)
제2차 시 험	전공필수 (택1)	산업안전 ▪ 기계안전공학 ▪ 전기안전공학 ▪ 화공안전공학 ▪ 건설안전공학
		산업보건 ▪ 직업환경의학 ▪ 산업위생공학
제3차 시 험	공통필수 (면접)	▪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▪ 산업안전·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▪ 상담·지도 능력

나. 시험시간

구분	시 험 과 목	입실	시 험 시 간
제1차 시 험	① 공통필수 I ② 공통필수 II ③ 공통필수 III	09:00	09:30 ~ 11:00 (90분)
제2차 시 험	▪ 전공필수	09:00	09:30 ~ 11:10 (100분)
제3차 시 험	▪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▪ 산업안전·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▪ 상담·지도 능력		수험자 1명당 20분 내외

-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**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**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

3. 시험방법

- 가. 제1차 시험 : 객관식 5지 택일형(과목당 25문항)
- 나. 제2차 시험 :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
- 다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
4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가. 응시자격 : 없음

- 단, 지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

나. 지도사 등록 결격사유 (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)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5.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6.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시험의 일부면제
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)

- 가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
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, 기계안전기술사, 산업위생관리기술사, 인간공학기술사, 전기안전기술사, 화공안전기술사 :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·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
 ※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 (제2차 시험)는 반드시 응시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(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), 기계 직무분야, 화학 직무분야, 전기·전자 직무분야(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)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: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
3. 「의료법」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: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·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
4. 공학(건설안전·기계안전·전기안전·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), 의학(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), 보건학(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) 박사학위 소지자 :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
5.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·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: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II 과목

※ 산업안전·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

- ① 안전·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
-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·등록된 산업안전·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
 ※ 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, 재해예방지도기관, 안전·보건진단기관, 작업환경측정기관,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(지정서로 확인)
-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
 ※ 품질·환경 업무, 시설(안전)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·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 기간은 제외하고, 경력증명서상에 ‘안전관리’ 또는 ‘보건관리’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

6. 「공인노무사법」에 따른 공인노무사 :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과목
7. 산업안전(보건)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: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I 과목

8. 산업안전(보건)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: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, 공통필수 II 및 공통필수 III 과목

※ '별표32'는 붙임 참조

나.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다. 경력 및 면제요건 산정 기준일 : 서류심사 마감일(2022. 2. 18(금))

6. 합격자 결정
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)

○ 필기시험

-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○ 면접시험

-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,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7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

○ 제1차 시험

- 정기 원서접수 : '22. 2. 14.(월) 09:00 ~ 2. 18.(금) 18:00 [5일간]
- 빈자리 원서접수 : '22. 3. 10.(목) 09:00 ~ 3. 11.(금) 18:00 [2일간]

○ 제2·3차 시험(동시접수)

- 정기 원서접수 : '22. 5. 16.(월) 09:00 ~ 5. 20.(금) 18:00 [5일간]
- 빈자리 원서접수 : '22. 6. 2.(목) 09:00 ~ 6. 3.(금) 18:00 [2일간]

※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: '22. 2. 7(월) 09:00 ~ 2. 18(금) 16:00 [토요일, 공휴일 제외]

※ 시험의 일부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(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) 후 원서 접수 진행 (승인 전, 원서접수 시 일반응시자로 접수 됨)

※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(취소)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,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

나. 접수방법

○ Q-Net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

※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(공단지부·지사)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

※ 단체접수는 불가

○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

▪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(JPG, JPEG 파일, 사이즈 : 150 X 200 이상, 300DPI 권장, 200KB 이하)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

※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접수도우미 운영

다. 수수료 납부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

○ 응시수수료 : (1차) 55,000원, (2·3차) 75,000원

※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

○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

※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,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(지정 시간까지 미 입금 시, 원서접수가 취소됨)

※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

※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은 가상계좌 이용 불가

라. 수수료 환불

○ 환불 방법

- 환불은 큐넷 산업안전·보건지도사 홈페이지 ⇨ “마이페이지”에서만 신청 가능

-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⇨ 각종 서식에서 ‘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’다운로드 후 작성 ⇨ 제출

구분	환 불 기 준
100% 환불	•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(과오납 금액분만 환불) •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•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60% 환불	•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

구분	환 불 기 준
50% 환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
환불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• 시험 결시자
사후환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(외)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•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(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) •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(국가(공공기관)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) •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 •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(재난문자,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)
<p>*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.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	

- ※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**인터넷(큐넷)**으로만 가능
- ※ 제3차 시험은 동시접수로 진행되므로, 환불기간은 제2차 시험 환불기간과 동일
- ※ **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·환불 불가**

마. 시험시행기관

기관명	구분	주소	우편번호	담당부서	연락처
서울지역본부	1·2·3차	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	02512	전문자격시험부	02-2137-0558
부산지역본부	1차	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	46519	전문자격시험부	051-330-1916
대구지역본부		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	42704	전문자격시험부	053-580-2384
광주지역본부		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	61008	전문자격시험부	062-970-1772
대전지역본부		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	35000	전문자격시험부	042-580-9155

※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
바. 수험표 교부

-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-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
 - ※ 「SMART Q-Finder」 도입으로 시험전일 18: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

사. 원서접수 완료 후(결제완료 후) 접수내용 변경 방법

-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,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

아.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

-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
 -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
 -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,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, 상지장애로 구분
 -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3) 의사진단서 제출(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
-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포함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(임산부는 의원급·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,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 - ※ 증빙서류 미제출시,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.
- 기타,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'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'참고

<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>

1.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2.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(불편사항) 등
3.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4. 진단서 유효기간
 - 단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, 의사진단서에 따름

자.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

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					
편의제공 대상	편의구분	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	작업형 실기시험	제출서류	
시각 장애	중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7배 연장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음성지원컴퓨터 - 문제지대독 - 점자 문제지 - 확대 문제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 문제지대독	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 - 확대 답안지 - 점자 답안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-	
	경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확대 문제지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	
		답안작성 방법	- 확대 답안지	-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-	
뇌병변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-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 격 조정)	-	

편의제공 대상		편의구분	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	작업형 실기시험	제출서류
지체 장애	(1) 상지 중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-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-	
	(2) 상지 경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-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-	
	(3) 하지(장애정도 구분 없음, 척추장애* 포함)	시험시간	- 일반 수험자와 동일	- 시험시간 1.1배 연장 ※ 단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	①,②,③호 중 하나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	-	
	지체 장애	(4) 복합장애 [상지+하지]	시험시간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- (1) 또는 (2)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+ (3)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
답안작성 방법 및 기타		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-	
청각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보청기 사용 -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-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- 별도시험실 배정	①,②,③호 중 하나	
신장 심장 정류요류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①,②,③호 중 하나	
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	일시적 신체장애	편의제공 사항 전반	-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④호	
	과민성대장증후군, 과민성방광증후군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
	임신부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④,⑤호 중 하나

※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※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
※ 제출서류

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.

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(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) 각 1부.

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.

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.
-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소견서 불인정, 유효기간 필요) 원본 1부.

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(예시)

•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(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+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)
⇒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[표준시간(60분) + {(60분)*0.3}=78분]
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[(60분*0.1)=6분] = 84분

8.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
가.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

○ 제1차 시험 : 2022. 3. 19.(토) 14:00 ~ 3. 25.(금) 18:00 [7일간]

○ 제2·3차 시험 : 해당없음

나. 공개 및 제시방법

○ 큐넷 산업안전·보건지도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

※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같음

9. 합격자 발표 및 시험합격 확인서 발급

가. 합격자 발표 일시

- 제1차 시험 : 2022. 4. 20.(수) 09:00
- 제2차 시험 : 2022. 7. 13.(수) 09:00
- 제3차 시험 : 2022. 9. 21.(수) 09:00

나. 합격자 발표 방법

- 큐넷 산업안전·보건지도사 홈페이지 [60일간]
- 자동안내전화(ARS) : 1666-0100 [4일간], 유료

다. 합격확인서 발급

- 발급대상 : 제1·2·3차 시험 합격자
- 발급방법 : 산업안전·보건지도사 큐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- 확인서 발급 - 신청·발급
- 발급기간 : 합격자 발표일부터 계속

라. 지도사 등록 신청

- 신청기관 : 주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(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)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
- 신청서류 : 등록신청서 1부, 이력서 1부, 반명함판 사진 2장(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)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(지도사의 등록) 제1항 “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”

10. 수험자 유의사항

【 제1·2·3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·위조·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
※ Q-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

※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

2.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포,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
※ 매 교시 **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**

※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

※ 신분증인정범위 :

- (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) 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,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,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, ④ 여권, ⑤ 공무원증(장교·부서관·군무원신분증 포함), 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, ⑦ 국가유공자증, ⑧ 국가기술자격증(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), ⑨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
- (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) 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,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, ③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, ④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- (미취학 아동)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“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”,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- (사병(군인))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

- (외국인) ① 외국인등록증,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③ 영주증

※ 신분증(증명서)에는 사진, 성명, 주민번호(생년월일),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(없는 경우 불인정)

※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

3.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4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, 시험시간의 1/2 경과 후 퇴실할 수 있습니다.

※ 단, 배탈·설사 등 긴급한 상황으로 시험포기 없이 시험 중에 퇴실하려는 자는 퇴실 가능하지만, 해당 교시에 재입실은 불가하고 시험시간 1/2 결과 전까지 시험 본부에 대기(퇴실 전 작성한 답안까지 인정)

5. 결시 또는 기권,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6.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**무효처리**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7.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**당해 시험을 무효**로 하고, 그 처분일로부터 **5년 간**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8.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※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 - ※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
9.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**수험자 본인**이 반드시 메모리(SD카드 포함)를 제거, 삭제(리셋, 초기화)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.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- ※ 단,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 - ※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(초기화 이후 세팅) 방법숙지
10. 시험시간 중에는 **통신기기 및 전자기기**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 등]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, **금속(전파)탐지기**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**장비를 소지·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(퇴실) 및 무효(0점)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** 바랍니다.
 - ※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

11.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12.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,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13.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14. 기타 시험일정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.

【 제1차 시험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답안카드에 기재된 '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'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2.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(유의사항)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,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.
3.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.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.
 - ※ 답안카드 견본은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
4. 답안카드 기재·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 - ※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
5.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(답안카드 기재·마킹착오, 불완전한 마킹·수정, 예비마킹, 형별착오 마킹 등)로 판독불능,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 - ※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,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(단,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)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
 - ※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

【 제2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'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'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2. 수험자 인적사항·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(그 외 연필류,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)
※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
※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
3.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,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.
4.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(=)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여야 하며,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【 제3차(면접)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수험자는 일시·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2. 소속회사 근무복, 군복, 교복 등 제복(유니폼)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 (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)

★ 산업안전·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엄정·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,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 고객센터(☎1644-8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수험자 유의사항은 원서접수 후 수험표 출력 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2

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(제103조제2항 관련)

구분	산업안전지도사				산업보건지도사		
	기계안전 분야	전기안전 분야	화공안전 분야	건설안전 분야	직업환경의학 분야	산업위생 분야	
전공필수	과목	기계안전공학	전기안전공학	화공안전공학	건설안전공학	직업환경의학	산업위생공학
	시험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계·기구·설비의 안전 등(위험기계·양중기·운반기계·압력용기 포함) -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- 기계·기구·설비의 설계·배치·보수·유지기술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기계·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등(전기방폭설비 포함) -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-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- 컴퓨터·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스·방화 및 방폭설비 등, 화학장치·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- 정성·정량적 위험성평가, 위험물누출·확산 및 피해 예측 등 -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,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·기계·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-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 - 추락·낙하·붕괴·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- 건설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 발병경로, 직업병의 증상판단 및 대책 등 - 역학조사의 연구방법, 조사 및 분석방법, 직종별 직업환경의학적 관리대책 등 -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,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 - 근골격계질환,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환기설비의 설계, 시스템의 성능검사·유지관리기술 등 -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, 산업위생통계처리 및 해석,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-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·대사 및 축적, 인체의 방어기전 등 - 측정시료의 전처리 및 분석 방법,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
공통필수 I	산업안전보건법령						
시험범위	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						
공통필수 II	산업안전 일반				산업위생 일반		
시험범위	산업안전교육론,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, 신뢰성공학, 시스템안전공학, 인간공학, 위험성평가,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				산업위생개론, 작업관리, 산업위생보호구, 위험성평가, 산업		

	위	분석 등	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
공통 필수Ⅲ		기업진단·지도	
	시험 범위	경영학(인적자원관리, 조직관리, 생산관리), 산업심리학, 산업위생개론	경영학(인적자원관리, 조직관리, 생산관리), 산업심리학, 산업안전개론